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08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소병철・김정호・강병원

박재호 • 서삼석 • 안규백

임호선 · 오영환 · 정일영

홍영표 • 위성곤 • 맹성규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.

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·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지만,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범죄가계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스토킹행위자가 집요하게 연락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추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'반의사 불벌'조항을 삭제하고,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·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·생 활권에 놓여있는 경우, 법원이 해당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.

또한 긴급응급조치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스토킹

행위에 '주거·직장·학교 등과 온라인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·기록·저장·보유·가공·편집'하는 행위를 추가해 거주지 등에서의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더욱 두텁 게 보호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주거·직장·학교 등의 장소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기록·저장·보유·가공·편집하는 행위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).
- 나.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게 함(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).
- 다.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, 법정대리인, 신고자, 사법경찰관,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제5조의2 신설).
- 라.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·학교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·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해당 직장·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(이하 "동일생활권 관리

자"라 한다)에게 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통지를 하도록 함 (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안 제9조제3항).

- 마.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확인 과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장소 이동·변경 등 격리 권고를 추가함(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).
- 바.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와 법원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장소·배치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- 사.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(안 제18조제3항 삭제).

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가족"을 "가족(이하 "상대방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 · 기록 · 저장 · 보유 · 가공 · 편집하는 행위
- 사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바목의 행위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

제5조제5항 중 "긴급응급조치기간은"을 "최초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은" 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) ① 지방법원 판사는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대방등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등과 그 법정대리인, 신고자, 사법경찰관,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은 그 정한 기간이 지날때마다 1개월의 범위에서 한다.
- ③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·학교,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업무·생활권이 중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(이하 "동일생활권"이라 한다) 사법경찰관은 해당 직장·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(이하 "동일생활권 관리자"라 한다)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"를 "검사,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"로 한다.

- 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
- 6. 제6조제2항의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 장소 이동·변경 등 격리 권고

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동일생활권 관리자의 조치) ①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제6조 제2항과 제9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활동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

위하여 활동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스토킹행위"란 상대방의 의	1		
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			
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			
인, <u>가족</u> 에 대하여 다음 각	<u>가족(이하 "상대방</u>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<u>등"이라 한다)</u>		
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			
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			
는 것을 말한다.	<u>,</u>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바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		
	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등		
	의 개인정보 또는 성범죄		
	에 이용할 의사로 사생활		
	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기		
	록・저장・보유・가공・편		
	집하는 행위		
<u>&lt;신 설&gt;</u>	<u>사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</u>		
	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		
	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		
	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바목		
	의 행위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 전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법정대리인 또는스토킹행위를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수있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 저

- ① ~ ④ (생 략)
- ⑤ <u>긴급응급조치기간은</u>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<신 설>
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
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최초의 긴급응급조치기간은
제5조의2(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
장) ① 지방법원 판사는 긴급
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
날 때까지 상대방등의 생명・
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
보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등과 그 법정대리인, 신고자, 사법경
그 협상되다면, 연포사, 사업성

① (생략) <신 설>

② (생 략)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치) ① ------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

찰관, 검사의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은 그 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의 범위에서 한다.
- ③ 긴급응급조치기간의 연장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.

제6조(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) 제6조(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직장·학교, 그 밖에 그 에 준하는 업무·생활권이 중 복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(이하 "동일생활권"이라 한 다) 사법경찰관은 해당 직장 •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(이하 "동일생활권 관리자"라 한다)에 게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 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

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<u>검사와 피해자 및 그</u> <u>법정대리인에게</u> 통지하여야 한 다.
- 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확인
- 6. 제6조제2항의 동일생활권 관리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활동 장소 이동・변경 등 격리 권고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-검사, 피해자와 그 법 정대리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-----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 제17조의2(동일생활권 관리자의 조치) ①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제6조제2항과 제9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스토 킹행위자에 대하여 활동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동일생활권 관리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보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・② (생 략)

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<삭 제>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호하기 위하여 활동장소의 변 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